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04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학원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3. 7. 19.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외 [redacted]일지 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8,798.09㎡의 건물(이하 '[redacted]스포츠센터'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2. 2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redacted]스포츠센터 전체 면적을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redacted]스포츠센터 중 수영장, 스쿼시장, GX룸, 헬스장 등 2,191.04㎡(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라 한다)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6. 10. 및 2015. 6. 11.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에 대해 별지1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redacted]스포츠센터는 [redacted]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들의 전공수업과 실습, 일반 학생들의 교양수업과 실습 등의 교육목적 및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체력단련 등의 복리후생 증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서, 학교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지역 주민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3항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개방하였을 뿐이고, 그 사용료도 실비변상의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의 이용현황

(대상기간: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구분	교육목적			자유운동		프로그램		계
	수업	학생활동(동아리)	대학행사	학생/교직원	일반	학생/교직원	일반	
인원(명)	86,090	11,348	21,802	180,696	71,328	63,312	108,160	542,736
비율(%)	15	2	4	34	13	12	20	100

2) 이용자별 수입내역(수강료 등)

(대상기간: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단위: 명, 천원)

학생		교직원		일반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915	284,084	3,014	189,670	8,161	640,534	17,090	1,114,288

3)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redacted]스포츠센터)의 운영방식 및 운영수익

가) 원고는 월 단위로만 회원을 모집하여 수영, 요가, 스쿼시, 헬스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각 프로그램 당 일정금액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받고 있다(2014년 상반기 기준 월 수강료가 수영 6만 원, 아쿠아로빅 6만 원, 요가 8만 원, 스쿼시 10만 원, 그룹운동 8만 원, 헬스 5만 원, 타바타 다이어트 10만 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나) [redacted]대학교와 [redacted]성심대학교 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퇴직자 포함) 및 가족, 공무원, 군·경, 유·초·중·고등교사, 1인 2강좌 등록자, 가족 동시등록자, 20인 이상 단체, 2개월 이상 등록자 등의 경우 수강료 감면혜택(최대 30%)을 부여한다.

다)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총 수입은 1,116,791,153원(수강료가 대부분)이고, 총 지출은 1,379,637,609원[임시직(직접) 224,842,700원, 강사료(프로그램) 200,805,000원, 강사료(개인레슨) 81,605,000원, 운영팀(간접) 218,280,000원, 직원 법정부담금(임시직) 16,671,450원, 상각비 20,844,076원+188,257,812원 등이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취득세 등 면제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redacted]스포츠센터 운영은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규모, 횟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료 내지 수강료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의 전체 이용인원 중 일반인의 비율은 33%[위 나.의 1)항 13+20%]에 달하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의 이용자격은 학생이나 교직원 등 원고의 구성원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수강료 내지 이용료의 할인혜택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이용하는 전체 유료회원 중 일반인의 비율은 47.8%[위 나.의 2)항(8,161명/17,090명×10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로 그들로부터 지급받는 수강료 내지 이용료가 전체 운영수익의 절반 이상인 57.5%[위 나.의 2)항(640,534원/1,114,288원×100)]를 차지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수업이나 행사 등 교육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이용비율의 21%[위 나.의 1)항 15+2+4%]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시간은 유료회원을 위해 할애된 시간으로 원고의 구성원과 일반인의 구분 없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라) 원고가 책정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의 이용요금은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 여타의 동종시설 이용요금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재판장 판사 정성균

판사 오에스더

판사 문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액(원)
2015. 6. 11.	취득세(부동산)	144,323,070
	지방교육세	7,059,800
	농어촌특별세	8,824,760
	합계	**160,207,630**
2015. 6. 10.	재산세(건축물)	5,158,260
	지역자원시설세	1,579,750
	지방교육세	661,310
	합계	**7,399,320**
2015. 6. 10.	재산세(토지)	428,620
	지방교육세	50,430
	합계	**479,0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